

대구 만촌역 태왕아너스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본 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2.2.27)에 따라 주택의 공급지역을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1.23) 현재 대구광역시시는 물론 이와 인접한 경상북도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단,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대구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자 및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당첨자 중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희망한 분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지상1층은 필로티이며, 우선 배정 신청시 최하층은 지상2층입니다.
- 인터넷청약안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거)
·청약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가입은행 인터넷 뱅킹과 전자공인 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순위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금을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서비스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면적의 표기방법 변경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바랍니다.
- 주택청약 서비스 이용시간 변경
2009년 4월1일부터 은행의 영업시간 변경(09:30~16:30→09:00~16:00)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주택청약 서비스 이용시간이 (08:30~18:00→08:00~17:30) 되었으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하며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수성구 건축과 - 3342호(2015.01.23)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850번지 일원
 - 공급규모: 지하1층, 지상8~15층 1개동 총 69세대(특별공급 19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대지면적: 3,714.00㎡(근린생활시설포함)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주거전용면적)	타입	주택 공급면적			기타공용 (지하주차장포함)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 양 세대수	저층배정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일반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민영 주택	2015000030-01	65.1014	65A1	65.1014	22.5049	87.6063	4.6531	92.2594	37.2679	12	1	1	1	0	9	2
	2015000030-02	47.7994	47A2	47.7994	18.5793	66.3787	3.4164	69.7951	27.3632	2	0	0	0	0	2	0
	2015000030-03	84.9422	84B1	84.9422	28.7848	113.7270	6.0712	119.7982	48.6260	53	5	5	5	1	37	4
	2015000030-04	58.9464	58B2	58.9464	21.7174	80.6638	4.2131	84.8769	33.7444	2	0	0	0	0	2	0
계										69	6	6	6	1	50	6

※ 주거공용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타입	동호수 구분	공급 세대수	층별 구분	분양가격			계약금 (20%)		중도금(60%)							잔금(2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10%)	2차(10%)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계약시	15.04.10	15.06.10	15.08.10	15.11.10	16.02.10	16.05.10	16.08.10	입주지정일	
65.1014	65A1	1호, 6호라인	4	2, 3층	133,147,232	111,752,768	244,900,000	24,490,000	24,490,000	24,490,000	24,490,000	24,490,000	24,490,000	24,490,000	24,490,000	48,980,000	
			8	4층~7층	133,147,232	119,352,768	252,500,000	25,250,000	25,250,000	25,250,000	25,250,000	25,250,000	25,250,000	25,250,000	25,250,000	50,500,000	
47.7994	47A2	1호, 6호라인	2	8층	97,760,690	91,239,310	189,000,000	18,900,000	18,900,000	18,900,000	18,900,000	18,900,000	18,900,000	18,900,000	18,900,000	37,800,000	
84.9422	84B1	2호,3호, 4호,5호 라인	8	2, 3층	173,726,200	173,273,800	347,000,000	34,700,000	34,700,000	34,700,000	34,700,000	34,700,000	34,700,000	34,700,000	34,700,000	69,400,000	
			45	4~15층	173,726,200	184,073,800	357,800,000	35,780,000	35,780,000	35,780,000	35,780,000	35,780,000	35,780,000	35,780,000	35,780,000	71,560,000	
58.9464	58B2	5호라인	2	13, 14층	120,558,851	124,541,149	245,100,000	24,510,000	24,510,000	24,510,000	24,510,000	24,510,000	24,510,000	24,510,000	24,510,000	49,020,000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파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기준 공정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본 주택의 분양 중도금은 당사가 일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음.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잔금은 주택의 사용감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 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감사 포함)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입주 잔금은 사용감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동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
- 상기 세대당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정리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상호 정산함(단, 소수점 이하는 정산하지 않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임.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는 사항임.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당 사업지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주택공급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른 특별공급 적용 주택으로 전용 85㎡이하 공급규모의 10%이내를 특별공급 함.
- 당 사업지는 정부의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다자녀가구(구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적용 주택으로 건설량의 10%이내를 특별공급 함.
- 당 사업지는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적극 지원 및 결혼 출산을 촉진하기 위한“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적용 주택으로 전용 85㎡이하 공급규모의 10%이내를 특별공급 함.
- 당 사업지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적용 주택으로 공급 주택형별 3%이내를 특별공급 합니다.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문	목재문(문틀, 문짝, 도어록 및 경첩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발코니내부 PL창호, 세대 현관방화문 및 도어록, 소방관련 방화문
바닥	바닥재(마루판, 현관타일바닥, 현관디딤판등 일체),걸레받이, 발코니바닥타일 및 재료분리대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벽	벽지, 장식벽(벽지, 타일, 비닐쉬트 및 패널류 등), 가변형벽체,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벽체도장, 신발장, 화장대(상판 및 거울포함), 드레스룸(도어 및 시스템선반포함), 반침장, 재료분리대(욕실포함)	콘크리트 벽체 바탕처리 또는 기타부위 석고보드 마감
천정	천장지(벽지류), 반자돌림(물딩), 우물천정, 인테리어마감, 발코니천장도장	천장을 위 석고보드 마감
욕실	천장, 타일(바닥,벽),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수전 및 헤드, 수전 등), 샤워부스, 욕실악세서리 일체, 욕실장, 바닥배수구커버(트렌치 포함), 욕실환풍기, 욕실스피커폰	액체방수 및 구체 위 바탕처리, 설비배관, 전기배관/배선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악세서리 포함), 벽타일, 설비수전류, 렌지후드, 가스쿡탑, 주방액정TV	소방검사 관련 후드, 주방 배기덕트
조명기구	부착/매립/거치형 조명등기구(간접조명포함,) 욕실매입등	배선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평형 및 타입별 품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금액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주거전용면적)	65.1014(A1)	47.7994(A2)	84.9422(B1)	58.9464(B2)
마이너스옵션금액	19,720,000	15,360,000	24,010,000	17,040,000

※상기금액은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분양가격은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 마이너스 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1.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2.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함.
3.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확장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 확장옵션을 선택할 수 없음.
4.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5.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됨.
6. 사용감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추후별도 안내문을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임.
7.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된 실내건축 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8.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9.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10.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11. 마이너스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12.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13.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약속서를 작성하여야 함.
- 14. 마이너스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셔야 함.
- 15. 마이너스 옵션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

■ 발코니 확장공사비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주거전용면적)	65.1014(A1)	47.7994(A2)	84.9422(B1)	58.9464(B2)
발코니확장 공사비	6,595,000	없음	11,225,000	9,515,000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2005.12.2 개정시행)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계약이 불가하며, 세부사항은 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함.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장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통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발코니 확장 세대는 미확장 발코니에 선통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정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사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함.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특별공급

- 특별공급 신청세대 공통사항[일반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 및 당첨자 선정일시·장소

구분	일시	장소
특별공급 신청	2015. 01. 28(수) (10:00~14:00)	당사 홍보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2015. 01. 28(수) (16:00~)	

※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당첨자 선정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해당 청약신청 일시에 당사 홍보관에 방문하여 청약신청 하여야 함.

※당첨자 선정(공고)유의사항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 (동·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4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호수 배정업무를 주청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특별공급의 추천순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일반 특별공급,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제19조 제7항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19조 제13항에 해당하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순으로 추천함.

■특별공급 공통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함)에 해당하는 자(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는 제외함], 제6항, 제7항에 의한 특별공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전용면적 85㎡이하만 해당)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 인정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고, 신청하기 전까지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선택한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3항에 의한 특별공급(노부모 특별공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1순위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지역별/면적별 기준에 따라 각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1순위자

■특별공급 유의사항

- 1세대내 세대주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부부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 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당첨시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분은 무효처리 함.
-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하고,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함.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본인이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시 모두 무효처리함.
-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노무모양 특별공급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 제외)
- 청약시 무주택임증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무주택서약서(당사 홍보관 비치)로 대체하고 당첨자에 한하여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검색으로 적격자를 선정함.
- 계약체결일: 2015. 02. 10(화) ~ 2015. 02. 12(목) (3일간, 각 순위 정당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1) 일반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 6세대 / 전용 85㎡이하세대의 10% 이내)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 01. 23) 현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
-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 6세대 / 전평형의 10% 이내)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 01. 23) 현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자로서 민법상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을 둔 세대주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던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3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되며,(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됨) 재혼으로 성이 다른 3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계	65		점수	
미성년 자녀수(1)	5	4자녀 이상	5	자녀(입양아 포함)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세대주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 이하 이표에서 같다)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정	5	세대주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세대주 나이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세대주 나이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기간(5)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봄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유의사항> (1),(2):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4):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을 적용
 (4),(5):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3)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 6세대 / 전용 85㎡이하 10%이내)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 01. 23) 현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소득기준

구분	2013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606,216원 이하	5,102,802원 이하	5,357,446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5,527,459원 이하	6,123,362원 이하	6,428,935원 이하

-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이하하여야 함.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함)
- 나)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만19세 이상의 직계존·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함.
(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함)을 근무월수(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로 나눈 금액으로 함.
- 라)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본인)의 직계존·비속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단,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 시 임신 중인 경우 태아 수를 포함)

· 소득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세 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세무서
	신규취업자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신규사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사업자 등록증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 지급조서(직인날인)	·해당직장
무직자		·비사업자 확인각서	·접수장소

• 당첨자 선정방법

-상기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1)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 1) 대구광역시 거주자가 경상북도지역 거주자보다 우선함
-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재혼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며, 동일순위 안에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선정함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3항 : 1세대 / 전평형 3% 이내)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 01. 23)현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면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함.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

-특별공급 청약신청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기준표를 작성토록 함.(홍보관 비치)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5)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신청시 (배우자 포함)	특별공급 공통서류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당사 홍보관에 비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1통(용도: 주택공급 신청용)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가족관계증명서 1통(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미혼·이혼·사별,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한 경우) ·청약통장 가입(순위)확인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금융결제원 www.ap2you.com 에서 발급) 단, 특별공급 대상자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은 제외
	일반 특별공급	상기 특별공급 공통서류 외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1통(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상기 특별공급 공통서류 외 ·배정기준표(당사 홍보관에 비치)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 자에 한함)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동안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분) ·입양 입증서류(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관계 증명서 등)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 가족에 한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상기 특별공급 공통서류 외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서(당사 홍보관에 비치, 당해 사·도 거주기간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임)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일 확정, 본인 발급기준) ·임신증명서류(자녀를 임신중인 경우)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입증서류 및 이전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이전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자녀가 미등재된 경우) ·소득증빙서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 서류 포함) [상기 소득입증서류 참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상기 특별공급 공통서류 외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당사 홍보관에 비치)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제3자 대리인신청시 추가사항	공통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본인 신청시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함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대리 신청자의 인감도장(청약자 본인 인감도장 포함)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 01. 23)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2. 일반공급

■ 공통사항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 01. 23)현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세대주인 경우 만19세 미만인자 포함)이상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대구광역시 주택건설지역 거주 신청자가 경상북도 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경상북도 지역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모두를 무효 처리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 당첨자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3개월간 청약이 제한됨.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 가입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 가능함.

1)순위별 신청자격

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공통	85㎡ 이하: 가정제(40%), 추첨제(60%) 적용 / 85㎡ 초과: 추첨제 적용
		85㎡ 이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신청시 모두 가정제로 접수하고 본인 및 세대원이 2주택이상 소유시 주택소유수에 따라 감점적용
		85㎡ 초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3)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접수대상 없음
	3순위	전 주택형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 추첨제

- 주택소유 및 당점사실 판단대상: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 소유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하여 감점은 적용됨)
- ※가정제 개요(가정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 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정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 3 제4항 관련)

구분	대구광역시 거주자		경상북도 거주자	
	전용 85㎡이하	전용 85㎡초과 102㎡이하	전용 85㎡이하	전용 85㎡초과 102㎡이하
청약예금	250	400	200	300

- 전용면적 85㎡초과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관련 예금가입자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의하여 전용 85㎡이하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함.
- 청약접수 일정 및 장소

구분	순위	거주구분	접수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발표
민영주택	1·2순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2015.01.29	· 접수장소: 인터넷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 - 전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인터넷 접수시간 -08:00~17:30	· 일시: 2015. 02. 05(목). 10:00 · 장소: 당사 홍보관 및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금융결제원홈페이지(www.ap2you.com)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대화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순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2015.01.30	· 접수장소: 인터넷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 - 전 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 · 인터넷 접수시간 -08:00~17:30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거래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게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노약자, 장애인 등 창구 청약 가능시간: 해당 청약신청일 09:00~16:00, 단, 1·2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하며 3순위 접수는 청약자의 거래은행 창구에서 가능]
- ※주택청약 참가은행: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 ※2009.4.1부터 은행 영업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주택청약 업무시간이 08:00~17:30으로 변경됨.

- 2) 청약관련 예금 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전용면적 기준)
 - 전용면적 85㎡초과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관련 예금 가입자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정하여야함.
 - 신청가능 주택규모를 선택한 이후에는 2년이 경과하여야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 시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는 변경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단, 3개월 미만인 자는 변경 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 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접수 방법

1. 특별공급(일반 특별공급/다자녀가구 특별공급/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당사 홍보관에서 청약신청하여야 함.

2. 공통

· 층별·동별·호별·항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2014년 12월 2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사람중 최하층 주택의 공급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접수시 최하층 희망을 선택해 주시기 바람.

3. 1·2순위

·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정제로 청약접수 되며, 가정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정제, 60%를 추첨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전세대 추첨제로 신청자에게 공급함(2013.5.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4. 3순위: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5. 청약신청 접수시 유의사항

- 1)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2) 청약자격 기재방법
-거주개시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1.23)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도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3)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4)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가정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1. 청약가점제 관련 유의사항

-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 가정제에 의하여 동일순위(1,2순위)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일정비율로 배분된 가정제 및 추첨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정제 입주자 선정방법: 가점점수/감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 항목 및 점수: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17점) 등 총 84점.
- 가정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 하여야 함.

2. 가점점수 산정기준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서류등
① 무주택기간	32	1년 미만(무주택자에 한함)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 신고일을 확인)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감점점수(아래의 “감점 산정기준” 참고)						

3.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구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2)에 따른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자촉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 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자촉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자촉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자촉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자촉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 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자촉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자촉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자촉 가입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자촉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자촉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자촉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③ 입주자자촉 가입기간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자촉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자촉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입주자자촉 가입기간에 대한 가정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한다.

4. 감정 산정기준

감점항목	감점점수		
	구분	기준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2호 또는 2세대	-5
		3호 또는 3세대	-10
		:	:
②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제2항 제1호·제2호 또는 제12조 제1항 제1호·2호에 따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2호 또는 2세대	-10
		3호 또는 3세대	-15
		:	: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은 되나, 2주택 이상인 경우 상기 감점기준 적용함.

※ 감점점수가 전체 가정점수보다 많은 경우 가정제의 점수는 “0”점으로 산정됨.

5.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기준임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소형, 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주택(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민영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인터넷 신청접수 방법

구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대상	1) 1,2순위: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2) 3순위: 주택청약 참가은행 계좌 개설자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이용방법 및 절차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부동산→청약→인터넷청약	청약통장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홈페이지(www.ap2you.com)에 접속→인터넷청약

■ 노약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1·2순위: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 주택청약 참가은행 본·지점 비치) · 청약예금 또는 부금통장(1·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2순위자에 한함)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시: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청약신청금(3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생략)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3순위 청약신청금: 금융결제원(www.ap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 혹은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지점 창구 신청접수

주택형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전 주택형	100만원	-주택청약 참가은행(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에 계좌개설 후 3순위 청약금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람.(인터넷 청약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창구청약시 청약을 접수하는 해당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2015.02.06]이후 평일 09:00~16:00(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장소: 청약신청시 청약자가 지정한 거래은행 계좌로 이체 신청하신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 이후에 자동 이체됨. 환불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청약 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
- 환불시 구비사항
 - 본인, 배우자 환불시: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 제출), 주민등록증, 신청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위임장
- 3순위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3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 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 입주자 선정 발표 일시:2015.02.05(목) 10:00 (동·호수는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으로 추첨함. 단, 금융결제원의 일정에 따라 발표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 당사 홍보관에서 당첨자만 선정(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의 입회하에 당사 홍보관에서 공개추첨 함)후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에서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동·호 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일반공급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2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2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 함 -전용면적 85㎡이하: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공급 -전용면적 85㎡초과: 100% 추첨제로 공급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 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초로 배정 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홍보관에 별도 공고함
--	--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홍보관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정당당첨자의 계약체결 기간 이후 발생한 미계약 세대 및 계약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일정 등은 별도 통보함.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부동산→청약→당첨확인	금융결제원홈페이지(www.apt2you.com)에 접속→당첨사실조회
	이용기간	2015. 02. 05 ~2015. 02. 14 (10일간)	
ARS	이용방법	국민은행콜센터(1588-9999)[서비스코드:913]	전자금융공동망(1369)[서비스코드:5#]
	이용기간	2015. 02. 05 ~2015. 02. 14 (10일간)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정당당첨자: 2015. 02. 10(화) ~2015. 02. 12(목) (3일간. 시간 10:00~16:00)
- 계약체결장소: 당사 홍보관
- 계약금 납부: 아래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는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계약기간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여부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당첨자에게 적격여부 확인 후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당첨 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이중당첨자 또는 부적격당첨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이 취소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및 분양대금 납부계좌	신용협동조합 (134-002-150333)	국제자산신탁(주)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금융기관의 본·지점에서 무통장 입금(타행 입금 불가)하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 되지 않음.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무통장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금융기관(계좌번호)
정당당첨자	· 주택공급 신청 접수(영수)증(단, 인터넷 청약신청자 중 당첨자는 제출 생략)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아파트 계약용) 또는 서명인증서 1통(외국인에 한함), 계약자의 인감도장 · 계약금(가능한 한 해당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가정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 등)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초본 1통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초본 각 1통(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단 직계비속은 만30세 이상자에 한함) · 직계비속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당첨자 중 해당자)	-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 등본 포함)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 구비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홍보관에 비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 01.23)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조건 등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단, 부적격 당첨자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3개월간 청약이 제한됨)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 신청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으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만 함).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2009.4.1. 재당첨 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 기타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준함.

■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 계약금 2차 및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홍보관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에 따라 계약금 2차 및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 계약금 2차 및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금 2차 및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계약금 2차 및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계약금 2차 및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
-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계약금 2차 및 중도금을 용자받을 경우 그 용자금에 대한 이자를 입주 개시 월의 입주개시 전일까지는 사업주체가 우선 납부하며 계약자가 잔금납부시에 사업주체가 우선 납부한 이자를 포함하여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계약금 2차 및 중도금 이자후불제)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 14의 2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약 1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16년 11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선납할인은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 청약자격 전산수룩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룩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청약자측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야 함.

·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3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 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는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음.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출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강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기로 함(단, 소수점 이하는 정산하지 않음)

·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홍보관에는 견본주택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음.

· 홍보관에 전시한 마감자재는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홍보관은 분양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홍보관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홍보관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홍보관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홍보관,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본 아파트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단지 마을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홍보관 및 모형, 마감재 보드,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홍보관을 우선으로 함)

· 홍보관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홍보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함

·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을 기준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형 선택시에는 별도의 추가 공사비를 납부해야 함.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를 입주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 각종 홍보물 및 홍보관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
- 발코니확장 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 계약 불가함.)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홍보관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할 구청에 반드시 허가나 신고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전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위치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위치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비확장형 선택시 가변형 벽체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의 내외부 색상은 입면 색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물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지하철, 도로, 공공용지, 완충 녹지, 경관녹지, 공원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
- 대한주택보증(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의 인허가 절차에 따라 본공사 진행중에 색채, 입면, 옥탑구조물, 조경, 사인물 등에 대하여 토달디자인 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인허가도서, 분양시 홍보관에 표현된 모형 또는 분양홍보물의 계획과 달라질 수 있음.
- 사업부지 서측, 남측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및 시설물은 사업완료시까지 관할 관청에 기부채납 할 예정임.
- 초등학교는 대구 대청초등학교에 배치되고, 중학교는 2학교군 내 분산 배치되며, 고등학교는 1학군 내 분산 배치됨.
- 본 사업위치는 항공기 소음에 노출된 지역으로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항공기 소음 피해와 관련하여 입주자는 군부대, 민간항공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하여 일체의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
- 사업지 서, 남 도로와 접한 단지 내 보행자 도로(폭 2m)는 토지의 점·사용권이 관할 수성구청에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함.
- 사업계획승인 조건 권장사항1에 명시된 내용 “아파트 남측 확장구간 중 아파트 입구 좌측인도 돌출부는 주변의 토지 (만촌동 902-12)를 편입하여 도로가 일정한 폭으로 유지되어 교통 혼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건설회사 도로시설]”을 이행할 경우 토지교환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지면적이 감소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지 주변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홍보관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람.
-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홍보관에서 사전에 확인하여 함.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음
- 단지내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 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임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음.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용 실외기가 지상1층(조경시설 등)에 설치됨으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주동 저층부는 입면계획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실 등의 일부 부대시설이 아파트 지하에 위치함.
- 단지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식재수종이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구역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과 포장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시설로서 아파트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정당 당첨자 계약일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인근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홍보관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의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단지내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동 환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아파트 외부 마감은 디자인 계획에 따라 적용함.
- 현장 여건에 따라 지붕, 축벽, 동 출입구, 경비실, 운주 등의 디자인형태 및 색채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지상부분의 돌출시설물(D.A, 등)은 세대내의 조망권을 고려하여 차폐보완 또는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층 단차로 인한 세대가 일부 외기에 접합으로 인한 난방효율이 저하될 수 있음.
- 단지내 헤파 및 횡단보도의 설치 위치는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함.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구분	항목	적용여부	비고
의무사항 이행여부	고기밀창호	적용	
	고효율기자재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열스위치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절수기기	적용	

※ 본 사업지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0-421호(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적용하여 인정받은 사업지임.

■ 택지비 감정평가 금액 및 기관

(금액단위 : 원)

구 분	면적(㎡)	감정기관	감정금액(원)
사업부지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부지 포함)	3,714	대한감정평가법인	₩ 12,479,040,000
		제일감정평가법인	₩ 12,352,764,000

■ 감리자 및 감리금액

(금액단위 : 원, VAT별도)

구분	건축감리	전기·정보통신감리	소방감리
회사명	㈜대명기술단건축사사무소	㈜정우디엔아이	㈜정우디엔아이
감리금액	200,300,000	25,500,000	12,5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사업주체	국제자산신탁(주) (주택건설 사업자등록번호 : 서울-주택2004-0091) (사업자등록번호 : 107 81 85459)	시공회사	㈜대왕이앤씨 (주택건설 사업자등록번호 : 대구-주대1988-0002) (사업자등록번호 : 504 81 89073)
------	--	------	---

■ 본 주택은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 주요내용 (금액단위 : 원)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82015-101-0000900호	₩18,466,800,000	입주자 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의 내용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택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가. 주택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택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라.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택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택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 2. 주택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택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택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2. 주택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홀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15. 주택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택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16. 주택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17. 주택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약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택분양보증약관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대한주택보증(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홍보관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38 6층 (수성동3가)

■ 분양문의 : 053)762-0667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홍보관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